

의안번호	2218501
의 퇴 인	한지아의원
회 답 일	2026.7. 3.
추계번호	26C2316

예방접종관리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억원(연평균 2,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기본계획(안 제8조)	100	-	-	-	-	100	2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예방접종 주간)	○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방접종 주간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홍보 등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재량규정
2	안 제8조(예방접종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1항)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3	안 제9조(예방접종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 (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예방접종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4	안 제10조(예방접종위원회)	○ (제1항) 예방접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의무규정
5	안 제11조(예방접종위원회의 구성)	○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의무규정
6	안 제13조(국가예방접종)	○ (제1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7	안 제14조(임시예방접종)	○ (제1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8	안 제15조(위탁의료기관의 지정 등)	○ (제1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재량규정
9	안 제17조(예방접종 교육)	○ (제1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방접종업무 종사자에게 예방접종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예방접종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의무규정
		○ (제2항)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재량규정
10	안 제25조(예방접종 휴가)	○ (제1항) 사업주는 국가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재량규정
11	안 제26조(예방접종 효과평가)	○ (제1항) 질병관리청장은 효과적인 예방접종 실시를 위하여 질병 및 접종률 감시, 면역도 조사, 백신 효과평가 등 예방접종 효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재량규정
12	안 제27조(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 (제1항)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의 처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기록·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13	안 제28조(예방접종약품의 구매 및 비축)	○ (제1항) 질병관리청장은 국가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약품의 공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방접종약품을 구매 및 비축할 수 있다.	재량규정
14	안 제29조(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 (제3항)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약품의 생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5	안 제34조(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역학조사)	○ (제1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3조제2항에 따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보고받거나 예방접종 관련 기록 등으로부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의심되어 원인 규명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을 통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의무규정
16	안 제35조(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	○ (제1항) 의료인등은 국가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 후 일반 의료기관에서 검사가 어려운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거나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질병관리청장은 의뢰받은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17	안 제36조(예방접종피해조사반)	○ (제1항) 제37조제1항에 규정된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장애·사망의 원인 규명 및 피해 등을 조사하고, 제42조제1항에 따른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의 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둔다.	의무규정
18	안 제37조(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의 국가보상)	○ (제1항) 국가는 국가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2. 장애인이 된 사람: 일시보상금 3. 사망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례비	의무규정
19	안 제38조(예방접종피해보상위원회)	○ (제1항) 국가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의 국가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피해보상위원회(이하 “피해보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의무규정
20	안 제39조(예방접종피해보상위원회의 구성)	○ (제1항) 피해보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2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4항) 제38조제2항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위원회의 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5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보상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1	안 제41조(예방접종피해보상 재심사위원회)	○ (제1항) 제4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 (제2항) 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의무규정
22	안 제45조(국고지원)	○ (제1항)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관리 및 예방접종 관련 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항) 질병관리청장은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예방접종을 제공받는 외국인에 대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재량규정
23	안 제47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제2항)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기관·단체 및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단체 및 전문기관에 대하여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6조(예방접종 주간)	×	○ 시행 중
2	안 제8조(예방접종 기본계획의 수립 등)	○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3	안 제9조(예방접종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	○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별도의 예산 배정 없이 자체 수립하도록 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예방접종 관련 계획이 포함되어 있음
4	안 제10조(예방접종위원회)	×	○ 시행 중
5	안 제11조(예방접종위원회의 구성)		
6	안 제13조(국가예방접종)		
7	안 제14조(임시예방접종)		
8	안 제15조(위탁의료기관의 지정 등)		
9	안 제17조(예방접종 교육)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0	안 제25조(예방접종 휴가)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현시점에 사업주가 국가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를 예측하기 어렵고, 제정안은 예방접종 및 비용의 지원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기 어려움
11	안 제26조(예방접종 효과평가)	×	○ 시행 중
12	안 제27조(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13	안 제28조(예방접종약품의 구매 및 비축)		
14	안 제29조(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현시점에 감염병 유행 및 공급 부족 등에 필요한 백신을 사전에 특정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
15	안 제34조(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역학조사)	×	○ 시행 중
16	안 제35조(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		
17	안 제36조(예방접종피해조사반)		
18	안 제37조(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의 국가보상)		
19	안 제38조(예방접종피해보상위원회)		
20	안 제39조(예방접종피해보상위원회의 구성)		
21	안 제41조(예방접종피해보상 재심사위원회)		
22	안 제45조(국고지원)		
23	안 제47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 대다수 조항 관련 사업이 현행법에 따라 시행 중이고, 제정안 시행에 따라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 상황에서 확대될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을 알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제정안 재정수반요인과 관련된 사업의 예산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2] 제정안 재정수반요인별 현행 사업 예산 현황

구분	재정수반요인	'26년 예산 (백만원)	내용
예방접종 실시주간	안 제6조	120	• 예방접종 콘텐츠 제작, 인력 교육 등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안 제10조 안 제11조	10 ¹⁾	• 예방접종전문위원회
국가예방접종	안 제13조 안 제15조 안 제45조	196,415	• 위탁의료기관 시행비(국가예방접종)
임시예방접종	안 제14조 안 제15조 안 제45조	42,135	• 위탁의료기관 시행비(코로나19)
예방접종 교육	안 제17조	309	• 예방접종 종사자 교육 및 운영
예방접종 효과평가	안 제26조 안 제47조	500	• 국가예방접종 평가 운영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안 제27조	12,059	• 예방접종시스템 관리 • 차세대 예방접종시스템 구축(2년차) • 코로나19예방접종 사업운영(코로나19 예방접종 시스템 유지·관리)
예방접종약품	안 제28조 안 제28조 안 제47조	181,415	• 국가예방접종 백신비
		2,089	• 국가예방접종 백신 비축, 보관, 조달수수료 등
		132,955	• 코로나19예방접종실시
이상반응 역학조사	안 제28조 안 제47조	71	• 국가백신 수급관리 지원 위탁운영
	안 제34조 안 제45조	100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 활동지원
이상반응 역학조사	안 제34조 안 제47조	473	• 코로나19백신 안전성연구센터 위탁
이상반응 검사	안 제35조 안 제47조	20	• 코로나19백신 안전성연구센터 위탁
예방접종 피해의 국가 보상	안 제37조	838	• 국가예방접종 이상반응관리(국가 및 임시예방접종)
		7,010	• 코로나19 피해보상금 등
	안 제37조 안 제47조	570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공공업무 위탁
예방접종피해보상전 문위원회	안 제36조	15 ²⁾	•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안 제38조 안 제39조 안 제40조	50 ³⁾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재심위원회	안 제41조	50 ⁴⁾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재심위원회

1)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6년 예산은 '국가예방접종실시' 세부사업 내 '사업점검·위원회 운영·국제협력 등' 내내역으로 일괄 편성되어, 25년도 집행액 기준으로 추정하여 작성

- 이 외에도 현시점에서 사업 등이 구체화되지 않아 추가재정소요 산출이 어려운 경우(안 제25조·제29조)를 제외하고, 본 추계서는 안 제8조(예방접종 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추계
 - 질병관리청의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예방접종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8조)
 - 제정안 시행에 따라 추계 기간 중 2028년~2032년에 대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시 2027년에만 관련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⁵⁾
 - －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제3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2023~2027)’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편성된 2022년 예산안 1억원을 준용함
 - 추계 결과, 2027년부터 2031년 사이 추가재정소요는 1억원으로 추계

[표 3]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기본계획 수립(안 제8조)	100	—	—	—	—	100	2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6년 예산은 ‘국가예방접종실시’ 세부사업 내 ‘사업점검·위원회 운영·국제협력 등’ 내내역으로 일괄 편성되어, 25년도 집행액 기준으로 추정하여 작성

3)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6년 예산은 ‘국가예방접종실시’ 세부사업 내 ‘피해보상반 등 운영’ 내내역으로 일괄 편성되어, 25년도 10~12월 집행액 기준으로 추정하여 작성

4)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6년 예산은 ‘국가예방접종실시’ 세부사업 내 ‘피해보상반 등 운영’ 내내역으로 일괄 편성되어, 25년도 10~12월 집행액 기준으로 추정하여 작성

5) 예방접종 종합계획 수립 지원연구(‘25.4 ~ ’25.10) 일반연구비가 약 40백만원 지출되었고, 법정계획이 아니므로 일회성 연구용역으로 수행됨

IV. 부대의견

-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직무대리)
사회비용추계과	이소임	이제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소임	02-6788-4742	soimlee@assembly.go.kr